

#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 문 혁 의원)

의안 번호	41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1년 11월 23일

발 의 자: 장문혁 의원

찬 성 자 이주웅, 심현정, 이명순의원

## 1. 제안이유

기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 중 거주기한 2년을 1년으로 변경(안 제3조제1항)
- 나. 지원대상 중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를 부 또는 모로 변경(안 제3조제1항)
- 다.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있는 사람으로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외 이혼을 추가함(안 제3조제2항)
- 라. 지원신청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변경(안 제5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입법예고 : 2021. 11. 06. ~ 2021. 11. 21.(15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.
- 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1. 11. 02~ 2021. 11. 05. 제출된 의견 없음.

##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2년”을 “1년”로, “부모”를 “부 또는 모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2년 미만”을 “1년 미만”으로, “2년이”를 “1년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망한”을 “이혼 또는 사망한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30일”을 각각 “6개월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①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<u>2년</u>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(이하 “군” 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 신생아,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로 한다. 단,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<u>2년 미만</u>인 경우에는 <u>2년</u>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.</p> <p>② 부모가 <u>사망</u>한 경우에는 영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지원신청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<u>30일</u> 이내 읍·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거주기간이 미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① ----- ----- 1년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 또는 모</u> . ----- ----- ----- 1년 <u>미</u> <u>만</u>----- 1년<u>이</u> ----- ----- .</p> <p>② ----- <u>이혼 또는 사망</u>한 ----- ----- ----- .</p> <p>제5조(지원신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6개월</u> ----- ----- . -----</p>

도래한 사람은 거주기간 도래  
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 
제출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-----  
---- 6개월 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## [관련법령]

### 한부모가족지원법

제2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4. 12., 2014. 1. 21., 2018. 1. 16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3. 22., 2016. 12. 20.>

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의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12. 20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21., 2016. 12. 20.>

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2., 2013. 3. 22., 2014. 1. 21., 2016. 12. 20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제3조(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) ① 한부모가족의 모(母) 또는 부(父)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·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<신설 2011. 4. 12.>

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 <신설 2018. 1. 16.>

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

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2., 2018. 1. 16.>

## 다문화가족지원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2.>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 <신설 2012. 2. 1., 2015. 12. 1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2. 2. 1.>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2년”을 “1년”로, “부모”를 “부 또는 모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2년 미만”을 “1년 미만”으로, “2년이”를 “1년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망한”을 “이혼 또는 사망한”으로 한다.  
제5조제3항 중 “30일”을 각각 “6개월”로 한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장문혁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6